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22

발의연월일: 2025. 2. 27.

발 의 자:이만희·서천호·구자근

이성권 · 김기웅 · 김예지

이종배 · 김소희 · 김상훈

조은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 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·직업상담, 취업알 선, 채용박람회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,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경찰공무원, 군인 및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에 맞지 않음.

이에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국민안전에 대한 전문능력의 사회자원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3조).

법률 제 호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1항 중 "위하여"를 "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퇴직소방공무원"을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소방공무원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행 개 정 안 혀 제13조(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제13조(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) ① -----는 퇴직소방공무원(퇴직 예정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 서 같다)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 ----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무원에게 진로 · 직업 상담, 취 하는 바에 따라-----업알선,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 (2) -----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 라 퇴직소방공무원---시할 수 있다.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